

선린머니 표준약관

[2017. 7. 3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스마트로(이하 "운영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선린대학교 재학생 전용 전자화폐인 "선린머니"(이하 "선린머니"라 함)를 충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선린머니"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과 "운영사" 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선린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운영사"에 "선린머니" 사용을 신청하고, 운영사로부터 "선린머니"의 사용을 허락 받아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선린머니"란 "운영사"가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린대학교 학생증" 또는 "선린대학교 모바일 학생증"(이하 "학생증"이라 함)에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한 전자화폐로서, "회원"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선린머니"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운영사"와 체결한 선린대학교 내 점포를 말합니다.
4. "충전"이란 "선린머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등을 통해 "운영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5. "유효기한"이란 "회원"이 본 조 제4호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린머니"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6.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이 "운영사"에 대하여 기 충전된 "선린머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선린머니"의 "충전" 및 이용 등

제3조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 ① "회원"은 "선린머니"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학생증" 발급 시 은행의 영업점, 온라인 계좌이체

등을 통해 "운영사"가 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 및 "충전"할 수 있으며,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자격은 선린대학교의 신입생, 재학생, 휴학생으로 한정됩니다.

- ② "선린머니"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③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시, "회원"에게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 명, 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온라인상의 사용신청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제4조 ("선린머니"의 "유효기한" 갱신 및 환불)

- ① "운영사"는 "선린머니"의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모바일 "학생증" 상의 화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표기합니다.
- ②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를 잔여 "유효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③ "회원"이 소지한 "선린머니"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운영사"에 신청하여 "선린머니" 잔액에 대해 "유효기한"을 갱신하거나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선린머니"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운영사"에 신청하여 "유효기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⑤ "운영사"는 "선린머니"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갱신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운영사"가 "회원"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선린머니"와 "소멸시효")

- ① 기사용 "선린머니"의 잔액은 최종 사용월로부터, 미사용 "선린머니"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하 "소멸시효기간"이라 함)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운영사"의 필요 시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운영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린머니"의 미사용 잔액을 선린대학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사"는 5만원 이상의 "선린머니"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등 기부 관련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운영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제3항에 대하여 "회원"이 동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한 환불 방법으로 "회원"에게 환불하며, 환불에 대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선린머니"의 이용)

- ① "선린머니"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이 "선린머니"로 재화를 구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선린대학교내 "가맹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선린머니"를 충전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선린머니" 사용 시, "운영사"는 해당 "선린머니"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 ④ "회원"은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시 그 대가로 "선린머니"를 지불할 경우, "가맹점"에 "선린머니"의 정보가 기록된 "학생증"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학생증"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 단가가 "5만원 이하"인 거래의 경우 무서명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선린머니"의 이용 제한)

- ① "선린머니"는 "운영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선린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②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선린머니"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운영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선린머니"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선린머니"의 충전 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5. 기타 "선린머니" 기록 정보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선린머니"가 전항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운영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사유발생 당일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④ "회원"은 "운영사"에 대하여 "선린머니"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운영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하여 "선린머니"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선린머니"의 환급)

- ①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선린머니"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린머니"에 충전합니다.
- ③ "회원"이 "선린머니"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사"가 취소전표를 접수, 확정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린머니"에 충전합니다.

제9조 ("선린머니"의 충전)

- ① "선린머니"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회에 최고 5만원입니다.
- ② 운영사는 "선린머니"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선린머니"의 잔액 확인)

"선린머니"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학생증의 경우 잔액표시 화면.
2.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제11조 ("선린머니"의 소득공제)

"회원"이 "선린머니"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운영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린머니" 이용금액
2. 환불금액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선린머니" 이용금액

제12조 ("선린머니"의 환불)

- ① "회원"은 "운영사" 콜센터 및 모바일 학생증 내 환불신청 e-mail 등을 통해 해당 "선린머니"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운영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운영사"가 별도로 정한 양식을 통해 "회원" 본인 여부와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린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린머니"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린머니"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4. 졸업, 자퇴, 등 선린대학교 학생으로서 자격을 잃거나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제13조 ("선린머니"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선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운영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영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린머니"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의 분실·도난 시, "선린머니"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신규 발행된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린머니"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4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운영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10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선린머니"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운영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⑤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운영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운영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린머니"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운영사"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선린머니"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선린머니"의 정보를 이용한 "선린머니"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선린머니"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선린머니"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선린머니"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운영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운영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운영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운영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16조 (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운영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또는 구매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7조 (이용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운영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운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모바일 "학생증" 내 Push 문자 서비스,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2017년 3월 1일 이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갱신한 "회원"에 대해 적용됩니다.